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555 |
|----------|------|

제출연월일: 2026. 2. 26.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이유

- 가. 주택단지에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으나, 어린이 수 감소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기구 유지보수는 등한시되고 있는 실정임
- 나.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 사전 예방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적용범위: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사원 임대주택, 사원아파트 제외) 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기구
- 나. 지원, 지원기준 및 지원제외대상(안 제4조~제6조)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

다. 신청 및 지원 절차(안 제7조)

라. 환수조치(안 제8조)

마. 관계규정 준용(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나.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라.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50934호, 2025. 12. 30.)

라. 입법예고: 2025. 12. 23. ~ 2026. 1. 16.(24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따로 붙임)

- 5년간 5억원 정도(구 80%, 민간 20%, 지원금 상한액 40백만원)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공동주택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공동주택(회사의 사원임대주택과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중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시설 중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을 지원할 때에는 총사업비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시설당 4천만원으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내 시설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
2. 지원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그 밖에 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6 (제280회-복지건설위제2차부록)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지원대상) 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안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에 한한다.

1. 단지안 주도로, 보도, 주차장의 유지·보수
2. 단지안 도로상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단지안 보안등의 유지·보수(전구 등 소모품은 제외)

4. 재해 위험성이 있는 단지안 공동시설물의 보수
 5. 단지안 어린이 놀이터 및 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유지·보수
 6. 자전거 주차장 설치 및 보수
 7. 건물외부의 범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8. 건물 공용부분(공용계단실, 옥상, 외벽 등)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9.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화장실 및 샤워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설치 및 보수
 10. 단지안 수목관리(전지, 파쇄)
 1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1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 방지·구조활동 및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2. 국가유산 보호구역지정지역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에 의한 피해지역
 4. 소규모 공동주택
 5.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지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

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으로 비용 발생
 -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그 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한 어린이놀이터 공사 사업비 참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 구분 \ 연도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
| | | 지출 | 공사비 | 100 | 100 | 100 | 100 |
| 감리비 | - | | - | - | - | - | - |
| 소계(a) | 100 | | 100 | 100 | 100 | 100 | 100 |
| 수입 | 시 | - | - | - | - | - | - |
| | 구 | 80 | 80 | 80 | 80 | 80 | 400 |
| | 기타 (민간자부담) | 20 | 20 | 20 | 20 | 20 | 100 |
| | 소계(b) | 100 | 100 | 100 | 100 | 100 | 500 |
| 총비용(a-b) | | 0 | 0 | 0 | 0 | 0 | 0 |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백만원)

| 구분 \ 연도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
| | | 국비 | 보조금 | - | - | - | - |
| 특별보조금 | - | | - | - | - | - | - |
| 시비 | | - | - | - | - | - | - |
| 기금 | | - | - | - | - | - | - |
| 구비 | | 80 | 80 | 80 | 80 | 80 | 400 |
| 기타 | | 20 | 20 | 20 | 20 | 20 | 100 |
| 합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500 |

1. 부대의견: 없음

2. 협의사항: 없음

3. 작성자 : 건축과 지방시설주사 천다정(290-4021)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1.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 구분 \ 연도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합계 |
|---------|--------|-------|-------|-------|-------|-------|-----|
| 국비 | 일반회계 | - | - | -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 | ○○기금 | - | - | - | - | - | - |
| 시비 | 일반회계 | - | - | -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 | ○○기금 | - | - | - | - | - | - |
| 구비 | | 80 | 80 | 80 | 80 | 80 | 400 |
| 공공단체 | | - | - | - | - | - | - |
| 민간자금 | | 20 | 20 | 20 | 20 | 20 | 100 |
| 합계 | | 100 | 100 | 100 | 100 | 100 | 500 |

2. 재원조달방안

- 구 자체 수입, 소유자 부담으로 조달
(구 80%, 민간 20%, 지원금 상한액 40백만원)

3. 부대의견 : 없음

4. 협의사항 : 없음

5. 작성자 : 건축과 지방시설주사 천다정(290-4021)